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 5.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범죄예방 관련 데이터의 통합관리·분석 및 연구개발을 위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마약류사범의 체계적·전문적인 재활 및 재범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마약재활팀, 교정시설 점검과 특별사범경찰 감독·지원·역량개발 등을 위한 특별점검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정보 빅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중 16명(6급 9명, 7급 6명, 8급 1명)을 상향 조정하며, 각 지방교정청에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 범죄의 신고·접수·수사·처리, 교정사고 조사 등을 위한 광역특별사범경찰팀을, 대전교도소 등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인 11개 주요 교도소·구치소에 소내 교정사고 조사, 소내 발생 범죄의 수사·송치 등을 위한 특별사범경찰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중 11명(6급 1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출입국기관에 출국대기실 효율적 운영을 통해 송환대상 외국인의 송환 안정성 확보 및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출국대기실운영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중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정원 중 9명(6급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 후 2026년 5월 31일까지 [단,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과 이에 필요한 정원의 직급상향 4명(6급 3명, 7급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존속시키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7급 1명, 9급 6명)을 기술직군 정원 6명(7급 1명, 9급 5명) 및 출입국관리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19. ~ 5.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범죄예방데이터과”를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감독과장 및 범죄예방데이터과장은 서기관으로, 소년범죄예방팀장”을 “전자감독과장은 서기관으로,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및 소년범죄예방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제7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예방데이터과장”을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범죄예방정책 관련 데이터 수집, 관리 및 분석
2. 범죄예방정책 관련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정책 관련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4.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시스템, 지능형 서비스 모델 등 디지털플랫폼 운영·관리

제8조제5항 중 “심리치료과를”을 “심리치료과·마약재활팀 및 특별점검팀을”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마약재활팀장·특별점검팀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제6호 중 “아동학대사범”을 “아동학대사범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약물·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⑭ 마약재활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4.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약류사범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6. 마약류사범 관련 교정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⑮ 특별점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시설 순회점검 계획 수립·시행
2. 교정시설 부정기·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 내 발생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주요 사건 조사
4. 광역특별사법경찰팀 및 특별사법경찰팀에 대한 지원·감독
5. 지방교정청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역량개발·교육에 관한 사항
6.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 중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를”을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로,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장은 서기관”을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장”을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분류센터를”을 “분류센터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을 “대체복무교육센터장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
집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15조제5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제4호 중 “수용 및 이송”을
“이송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기본·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의 운영

⑫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교정시설 내 수용자·직원·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
2.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 범죄의 신고·접수·수사·처리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4.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복무점검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5.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제16조제6항 본문 중 “교정관으로”를 “교정관으로, 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제2호 중 “성폭력사범·아동학대사범”을 “성폭력사범·아동학대사범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㉑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팀장을 두지 않는 교도소·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1. 소내 수용자·직원·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
2. 소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수사 및 사건송치
3. 인권위원회 진정, 청원, 송무 등 수용자 권리구제 및 수용자 상담·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엄중관리대상자·특이수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분석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천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를 “인천보호관찰소”로 한다.

제27조제9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사항”을 “사항과 이민연락관의 정보수집·공유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감시정 유지·관리 및 배치·운용에 관한 사항

㉕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제9항제15의2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33조제9항제5호 중 “5명”을 각각 “3명”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대전교도소·대구교도소·광주교도소, 안양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인천구치소,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의 부서에 “특별사법경찰팀”을 각 추가한다
별표 4의 2중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지원국(총무과·심사지원과·조사과·감식과·정보분석과·정보관리과·보안관리과), 심사1국(입국재심1과, 심사1과·심사2과·심사3과·심사4과·심사5과·심사6과·심사7과·심사8과·심사9과·심사10과·출국대기실운영팀), 심사2국(입국재심2과, 심사11과·심사12과·심사13과·심사14과·심사15과)
·	·
·	·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심사지원과, 심사과, 정보관리과, 출국대기실운영팀
·	·
·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u>보호과</u> , 관리과, 사범과, 의무과
·	·
·	·
화성외국인보호소	<u>보호과</u> , 관리과, 사범과, 의무과
청주외국인보호소	<u>보호과</u> , 관리과, 사범과, 의무과

별표 5의2 중 서기관 “19”를 “17”로 하고, 교정관 “21”을 “25”로 하며, 보호

사무관 “14”를 “15”로 하고, 출입국관리사무관 “32”를 “33”으로 하며, 교위 “19”를 “15”로 한다.

별표 7 중 공업주사보 “57”을 “58”로 하고, 공업서기보 “86”을 “89”로 하며, 기계운영주사보 “3”을 “2”로 하고, 기계운영서기보 “17”을 “14”로 한다.
별표 7의2를 신설한다.

별표 9 중 공업서기보 “16”을 “17”로 하고, 공업서기보 17 다음에 “시설 서기보 1”를 신설하며, 건축운영서기보 “2”를 “1”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12 중 출입국관리서기보 “512”를 “51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출입국관리사무관 “117”을 “116”으로 하고, 출입국관리주사 “425”를 “426”으로 하며, 출입국관리서기보 “512”를 “513”으로 하고, 사무 운영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무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마약재활팀·특별점검팀,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대구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대전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광주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서울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안양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서울동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인천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대구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경북북부제1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대전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광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 운영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은 2026년 5월 31일까지,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무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마약재활팀장·특별점검팀장·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각 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 각 교도소·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장,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장,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범죄예방디지털 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분장하고, 마약 재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심리 치료과장이, 제6호의 사항은 특별점검팀장(특별점검팀이 존속하지 않는 경우 보안과장이 분장한다)이 분장하며, 특별점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1호·제2호 사항은 교정기획과장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보안과장이, 제6호의 사항은 분류심사과장이 분장하고, 외국인 정보빅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민정보과장이, 각 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지방교정청 보안과장이, 각 교도소·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교도소·구치소 보안과장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입국재심1과장이, 김해 공항출입국·외국인청 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5의2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의 보호 사무관 2명, 보호주사 1명 및 보호주사보 1명과 마약재활팀의 교정관 2명, 교감 2명 및 특별점검팀의 교정관 2명과 교감 2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보호주사 2명, 보호주사보 1명, 보호서기 1명, 교감 4명, 교위 4명으로 보며,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의 출입국관리사무관 2명, 전산사무관 1명 및 전산주사 1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출입국관리주사 2명, 전산주사 1명 및 전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7의2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수원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인천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대구교도소·부산구치소·경북북부제1교도소·대전교도소·광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의 교정관 각 1명(총 11명)과 별표12의2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출국대기실운영팀의 출입국관리사무관 각 1명(총 2명) 및 출입국관리사무관 9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교감 11명, 출입국관리주사 11명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별표 7의 개정 및 별표 7의2의 신설에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공업주사보는 “57”로, 공업서기보는 “86”으로, 기계운영주사보는 “3”으로, 기계운영서기보는 “17”로 본다.

② 별표 9의 개정에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공업서기보는 “16”으로, 시설서기보는 “0”으로, 건축운영서기보는 “2”로, 열관리운영서기보는 “6”으로 본다.

③ 별표 12 및 별표 12의2의 개정에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출입국관리서기보는 “512”로, 사무운영서기보는 “12”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생략)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기획과 · 보호정책과 · 치료처우과 · 보호관찰과 · 소년보호과 · 전자감독과 · <u>범죄예방데이터과</u> 및 소년범죄예방팀을 둔다.	② ----- ----- ----- ----- <u>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u> -----.
③범죄예방기획과장 및 치료처우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관찰과장 및 소년보호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u>전자감독과장</u> 및 <u>범죄예방데이터과장</u> 은 서기관으로, 소년범죄예방팀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 ----- ----- ----- <u>전자감독과장</u> 은 서기관으로, <u>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u> 및 <u>소년범죄예방팀장</u>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치료처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삭제	
13. <u>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u>	<u><삭제></u>

⑦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신설>

⑧ ~ ⑨ (생략)

⑩ 범죄예방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통계 등 데이터 수집 및 분석

2.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3.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장치 개발 및 보급

<신설>

⑪ (생략)

제8조(교정본부) ① ~ ④ (생략)

⑤ 교정본부에 교정기획과·직업훈련과·사회복지과·복지과·보안과·분류심사과·의료과 및 심리치료과를 두며, 교정기

⑦ -----
-----.

1. ~ 20. (현행과 같음)

21. 보호관찰소의 치료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

1. 범죄예방정책 관련 데이터 수집, 관리 및 분석

2. 범죄예방정책 관련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정책 관련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4. 범죄예방정책 관련 정보시스템, 지능형 서비스 모델 등 디지털플랫폼 운영·관리

⑪ (현행과 같음)

제8조(교정본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심리치료과·마약재활팀 및

획과장 · 직업훈련과장 · 사회복지과장 · 복지과장 · 보안과장 · 분류심사과장 및 심리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료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교정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교정시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6. ~ 10. (생략)

⑦ ~ ⑩ (생략)

⑪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⑫ (생략)

⑬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

특별점검팀을 -----

--- 기술서기관으로, 마약재활팀장 · 특별점검팀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

⑥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10.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5. (현행과 같음)

6. 아동학대사범 등-----

한 사항

7. 약물·행위 중독 관련 수용자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7. 행위 -----

8. (현행과 같음)

9.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⑭ 마약재활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4. 중독재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약류사범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6. 마약류사범 관련 교정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⑮ 특별점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정시설 순회점검 계획 수립·시행

	<u>2. 교정시설 부정기·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u> <u>3. 교정시설 내 발생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주요 사건 조사</u> <u>4. 광역특별사법경찰팀 및 특별사법경찰팀에 대한 지원·감독</u> <u>5. 지방교정청등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역량개발·교육에 관한 사항</u> <u>6.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u>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출입국심사과·체류관리과·이민조사과·이민정보과·외국인정책과·국적과·이민통합과·난민정책과·난민심의과 및 <u>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u> 를 두며,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난민정책과장 및	⑤ ----- ----- ----- ----- ----- ----- <u>외국인정보빅데이터</u> <u>팀</u> ----- ----- ----- ----- -----

난민심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 ⑮ (생략)

⑯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제15조(지방교정청) ① (생략)

②지방교정청에 총무과·보안과·사회복지과 및 분류센터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관리과 및 대체복무교육센터를 따로 둔다.

③총무과장·보안과장 및 사회복지과장은 서기관으로, 분류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전산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정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④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

⑥ ~ ⑮ (현행과 같음)

⑯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
-----.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방교정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분류센터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
-----.

③-----

----- 대체복무교육센터장 및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
-----.

④-----
-----.

1. ~ 3. (생 략)

<신 설>

4. ~ 12. (생 략)

⑤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8. ~ 14. (생 략)

⑥ 삭 제

⑦ ~ ⑨ (생 략)

⑩ 분류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분류센터 심사대상자의 수용
및 이송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⑪ 대체복무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교육생에 대한 기본·직무교육 등 교육과정의 운영

3. ~ 7.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지도

및 감독(‘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을 포함한다)

4. ~ 12. (현행과 같음)

⑤-----
---.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8. ~ 14.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3. (현행과 같음)

4. ----- 이송
신청-----

5. ~ 7. (현행과 같음)

⑪ -----
-----.

1. (현행과 같음)

2. 대체복무요원(‘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기본·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의 운영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교도소·구치소) ① ~ ⑤
(생 략)

⑥의료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직업훈련과장은 교정관 또는 전문경력관 가
군(직업훈련 담당)으로, 그 외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
로, 작업제품전시관장은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다만, 서울
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및 광주교도소의 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⑫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직원·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

2. 관할 교정시설 내 발생 범죄
의 신고·접수·수사·처리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4. 관할 교정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복무점검 및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5.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제16조(교도소·구치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교정관으로,
특별사법경찰팀장은 교정관으
로-----.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서울
남부구치소 및 경북북부제1교
도소의 시설과장은 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으로 보한다.

⑦ ~ ⑱ (생략)

⑳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심리치료과를
두지 않는 교도소·구치소에서
는 보안과장이 분장한다.

1. (생략)

2. 성폭력사범·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
령 집행에 관한 사항

3. (생략)

<신설>

<신설>

-----.

⑦ ~ ⑱ (현행과 같음)

⑳ -----
-----.

-----.

1. (현행과 같음)

2. 성폭력사범·아동학대사범
등-----

3. (현행과 같음)

4.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㉑ 특별사법경찰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다만, 특별사법
경찰팀장을 두지 않는 교도소·
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분장
한다.

1. 소내 수용자·직원·외부인
관련 교정사고 조사

2. 소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수
사 및 사건송치

제23조(보호관찰소) ① ~ ③ (생략)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정부보호관찰소·인천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청주보호관찰소·울산보호관찰소·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⑤ ~ ⑩ (생략)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⑧ (생략)

⑨ 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출입

3. 인권위원회 진정, 청원, 송무 등 수용자 권리구제 및 수용자 상담·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엄중관리대상자·특이수용자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정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

제23조(보호관찰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인천보호관찰소-----

-----.

1. ~ 4. (현행과 같음)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②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단서 신설>

③ ~ ⑧ (생략)

⑨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2명(6급 또는 7급 2명), 의무직 3명(5급 3명),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출입국관리직 5명(8급 5명). 이 경우 정원 중 5명(8급 5명)을 임기제공무원

(2)-----

----- .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9조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
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
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
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_____

1. ~ 4. (현행과 같음)

5. -----

3명 - 3명 --. -----
3명 - 3명 -----

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6. (생략)	----- ----- ----- -----. 6. (현행과 같음)
---	---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u>19</u>		<u>17</u>	-2	
		•		•	•		
		•		•	•		
교정관			<u>21</u>		<u>25</u>	+4	
보호사무관			<u>14</u>		<u>15</u>	+1	
		•		•	•		
		•		•	•		
출입국관리사무관			<u>32</u>		<u>33</u>	+1	
		•		•	•		
		•		•	•		
교위			<u>19</u>		<u>15</u>	-4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주사보	<u>57</u>	<u>58</u>	+1
•	•	•	
•	•	•	
공업서기보	<u>86</u>	<u>89</u>	+3
•	•	•	
•	•	•	
기계운영주사보	<u>3</u>	<u>2</u>	-1
•	•	•	
•	•	•	
기계운영서기보	<u>17</u>	<u>14</u>	-3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단서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신 설>	16,672	+16,672
일반직 계	<신 설>	16,672	+16,672
고위공무원단	<신 설>	15	+1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신 설>	5	+5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	<신 설>	4	+4
서기관	<신 설>	58	+58
기술서기관	<신 설>	59	+59
서기관 또는 교정관	<신 설>	34	+34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신 설>	30	+30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2	+2
교정관	<신 설>	342	+342
의무사무관	<신 설>	24	+24
약무사무관	<신 설>	13	+13
간호사무관	<신 설>	1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2	+2
전산사무관	<신 설>	1	+1
교감	<신 설>	1,432	+1,432
공업주사	<신 설>	11	+1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신 설>	1	+1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신 설>	7	+7
농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신 설>	1	+1
식품위생주사	<신 설>	13	+13
의료기술주사	<신 설>	15	+15
약무주사	<신 설>	3	+3
간호주사	<신 설>	38	+38
시설주사	<신 설>	27	+27
전산주사	<신 설>	2	+2
방송통신주사	<신 설>	2	+2
교위	<신 설>	1,820	+1,820
공업주사보	<신 설>	58	+58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신 설>	1	+1
식품위생주사보	<신 설>	35	+35
의료기술주사보	<신 설>	14	+14
간호주사보	<신 설>	62	+62
시설주사보	<신 설>	23	+23
교위 또는 전산주사보	<신 설>	4	+4
전산주사보	<신 설>	1	+1
운전주사보	<신 설>	5	+5
교사	<신 설>	5,636	+5,636

공업서기	<신 설>	68	+68
방송통신서기	<신 설>	1	+1
식품위생서기	<신 설>	24	+24
의료기술서기	<신 설>	7	+7
간호서기	<신 설>	85	+85
보건서기	<신 설>	1	+1
시설서기	<신 설>	11	+11
교사 또는 전산서기	<신 설>	3	+3
전산서기	<신 설>	1	+1
운전서기	<신 설>	5	+5
교도	<신 설>	6,121	+6,121
공업서기보	<신 설>	89	+89
식품위생서기보	<신 설>	17	+17
시설서기보	<신 설>	5	+5
운전서기보	<신 설>	261	+261
기록연구사	<신 설>	4	+4
전기운영주사보	<신 설>	2	+2
기계운영주사보	<신 설>	2	+2
통신운영서기	<신 설>	1	+1
전기운영서기	<신 설>	5	+5
기계운영서기	<신 설>	6	+6

전기운영서기보	<신 설>	7	+7
기계운영서기보	<신 설>	14	+14
열관리운영서기보	<신 설>	3	+3
사무운영서기보	<신 설>	7	+7
전문경력관 가군(직업훈련 담당)	<신 설>	10	+10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신 설>	111	+111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보	<u>16</u>	<u>17</u>	+1
<u>시설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건축운영서기보	<u>2</u>	<u>1</u>	-1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6</u>	<u>5</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512</u>	<u>51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2</u>	<u>11</u>	-1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의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출입국관리사무관	<u>117</u>	<u>116</u>	-1
•	•	•	
•	•	•	
출입국관리주사	<u>425</u>	<u>426</u>	+1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512</u>	<u>513</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2</u>	<u>11</u>	-1